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48 발의연월일: 2022. 4. 20.

발 의 자:송기헌·김홍걸·민병덕

박주민 · 송재호 · 신영대

유정주 • 이상헌 • 정일영

조승래・최기상・허 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「군사법원법」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3항 중 "군검찰관을"을 "군검사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	제16조(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
행) ①・② (생 략)	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	③
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제3항	
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	
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	
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(<u>군검</u>	<u>군검</u>
<u>찰관을</u> 포함한다) 또는 그 지휘	<u>사를</u>
를 받은 사법경찰관(군사법경찰	
관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컴퓨터	
용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	
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	
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	
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	
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<u>.</u>